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하며,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 수급 상황은 석유공사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능분석’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하는 한편,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하고,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를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이하 “바이오매스”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3조의3을 삭제하고,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제37조제4항 중 “성분분석”을 “품질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및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제45조의3을 제45조의4로 하고,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보고 방법 및 기한)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가목3)의 “원유”를 “원유(친환경정제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원유(친환경정제원료를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의2 서식	매월 15일
-----------------------------	----	--------------	-----------------	--------

별표 8 제8호다목 다음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호가목3)에 따른 친환경정제 원료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통 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매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보고 방법 및 기한(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관련)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서				
가. 최초로 투입한 경우 또는 투입하는 친환경 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53호 서식	최초로 투입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전년도 사용 내역 보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53호 서식	매년 3월 31일까지
2.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용내역 보고 수리 업무 결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매년 4월 30일까지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제 조 시설	시설명	제조능력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기 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제조유종(油種)	수출입유종(油種)	사업개시일		최초 통 관 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비 고: 신청내용 중 제조시설의 기재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변경내용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소재지·규모)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소재지·제조능력)		
	[]제조 또는 수출입유종(油種)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품질시험서(제조 또는 수출입유종(油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정제원료 사용 내역 보고서

보고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정제시설 소재지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내역	친환경정제원료 종류	투입량
	투입공정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친환경정제원료의 공정도 등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1. 첨부서류는 최초 투입 또는 변경 보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 ----- ----- ----- ----- -----.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1. ----- ----- ----- ----- -----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

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
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한 물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
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
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이하 “바
이오매스”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

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
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
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
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
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

제3조의2 (생 략)

제3조의3(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영 제5조제9호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중유(동·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연료로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를 말한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

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
에테르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
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제3조의3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삭 제>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품질평
가 -----

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
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
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
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
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
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⑥ ~ ⑪ (생략)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
과금의 징수대상자 및 부과기
준) ①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2호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번호”란 “1516.20-2090”을 말한
다.

<신설>

-----.

⑤ -----

--- 제1항제1호-----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
과금의 징수대상자 및 부과기
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
다.

제45조의3(보고 방법 및 기한)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
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의3 (생략)

제45조의4 (현행 제45조의3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5221